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4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다. 조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조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 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
가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)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)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1호	200 300	400 600	800 1,000
나.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5조 제1항제2호	500	800	1,000
다.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·보관한 경우 1) 관련 기록을 작성·보관하지 않은 경우 2) 관련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·보관한 경우	법 제35조 제2항제1호	50 100	100 150	150 200
라.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)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)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	법 제35조 제2항제2호	50 100	100 150	150 200
마.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35조 제2항제3호	200	250	300